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086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욱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8,571,42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571,42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20. 4. 2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느단1266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2020. 5. 7. 이를 수리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결정문이 2020. 5. 26.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은 B에게 상속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소유권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설령 B가 그 상속재산분할협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B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상 B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에 의한 협의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목록(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주택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포시 대 2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0.3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45분의 18.7

소 장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A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68,571,42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571,42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해행위 취소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326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4. “피고는 원고에게 141,952,52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판결).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22. 5. 17.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44,462,110원입니다(갑 제2호증 원리금계산서).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B는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액이 현재 2억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부친 C이 2020. 4. 4.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중 2/7지분을 상속받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합니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바,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285,000,000원이고(갑 제5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45,000,000원(채권최고액 54,000,000원 / 120%)을 공제하면 240,000,000원이며, 이 중 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금액은 68,571,428원입니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이를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571,4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위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판결 |
| 2. 갑 제2호증 | 원리금계산서 |
| 3. 갑 제3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4. 갑 제4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

